

[별지 제7호의2 서식] **신용정보회사,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부수업무 신고서(제13조제3항 관련)**

신용정보회사,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부수업무 신고서				처리기간 : 7일
신 청 인	상호		대표자의 성명	
	주소		연락처	
신고하고자 하는 업무 및 업무방법				
「신용정보업감독규정」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 0000년 00월 00일 신고인 _____ 서명 또는 인 금융감독원장 귀하				
※ 구비서류 1. 부수업무의 예상 영업규모, 손익전망 등에 비추어 해당 신용정보회사,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건전경영을 저해할 염려가 없고 수익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2. 부수업무가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를 저해하지 않는지 여부 3. 부수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및 불공정행위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, 전문인력 및 적절한 업무체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협약서				수수료 없음